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 11. 11 규칙 제323호
개정 2005. 10. 5 규칙 제424호(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지원대상)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3.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
4.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월 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과 지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지원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및 반납)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목적

다. 내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내역	소요금액	산출근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계		
여성발전기금		
자체운용자금		
회원모금		
복지가후원금		
기타		

바. 정부보조금(국·도비여성발전기금)수원실적

(단위 : 원)

사업명	사업기간	수원(원조)금액	보조금 구분	비고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임원수					회원(단원)수		
회장	부회장	이사	기타	계	정회원	준회원	기타

나. 활동실적

기타	활동내역	비고

다.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 신고) 번호	등록(허가, 신고) 일자	등록(허가, 신고) 내용	등록기관명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정 산 서

- 1. 사 업 명
- 2. 사업비집행현황

(단위 : 원)

내역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여성발전기금				
자체 부담금				
기 타				

- 붙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각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1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진 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원)

집행내역	집행액	비고
계		

《비고》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예금종류	은행명	통장번호	이 율	기 간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교 부 대 장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담당자	담 당	과장